

開 會 辭

本研究所가 마련한 이 세미나에 기꺼이 참가하여 주신 國內外的 碩學 여러분에게 主催者 側을 대표하여 심심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中世의 西洋社會가 神學的 世界觀으로, 또 中世의 東洋社會가 儒學的 또는 道學的인 世界觀으로 支配되었던 社會라고 말할 수 있다면, 現代社會는 東西洋을 막론하고 法學的 世界觀으로 支配되는 社會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現代社會는 그 經濟的 構造와 科學的 技術에 있어서 高度로 發展하여 矛盾에 찬 복잡성을 띠게 되고, 그러한 社會의 變遷에 따라 모든 社會現象에는 法的인 문제가 영키게 되는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서 社會現象의 大多數가 복잡하고도 多樣的 法이라는 베일은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社會現象이 곧 法律現象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法的 比重이 커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公害問題, 人口問題 등 새로운 社會的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것은 반드시 法的인 處理를 요구하게 됩니다. 現代社會가 복잡해지는 것은 동시에 그 社會에 內在하는 矛盾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 복잡해진 矛盾點에는 반드시 法的인 껍질이 덮여 있기 마련인 것이며, 이 法的인 것에 대한 날카롭고도 確실한 觀察力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外面하고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點에서 法學의 重要性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法學研究의 方向과 焦點이 어디에 設定되어야 할 것인가는 自明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즉 모든 法的인 문제는 그것이 덮고 있는 內容, 즉 그러한 法的 問題를 제거케 한 社會的 또는 經濟的 現象을 究明함으로써만 올바른 解決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法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文字로 表現된 글귀에서 그 內容의 골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法的 表現에서 꼬집어 낼 수 있는 法的 책임의 밑바탕에 흐르는 社會的·經濟的 現象을 파헤침으로써만 法制度의 올바른 運營을 期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미나에서 發表되는 論文들은 社會的·經濟的 現象의 一部라 할지라도 그것을 덮고 있는 法的인 베일을 과감히 파헤치고자 하는 基本姿勢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現代社會가 당면하고 있는 法的 問題를 올바르게 解決하기 위하여는 그 바탕이 되는 社會現象을——그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變化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올바르게 認識하는 데서 出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는 法學研究의 方向이 社會現

象의 實證的 究明이라는 데 設定되어야 할 것으로 믿읍니다. 經濟現象, 社會現象의 變遷을 度外視한 法學研究란 하나의 概念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하겠고, 아무리 精巧한 理論도 現實 問題의 解決에 도움을 줄 수 없는 한낱 空論에 그치게 될 임려가 많읍니다. 우리는 法理論을 구사하는 나머지 法理論에 구사당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hrlich의 lebendiges Recht 라는 말이나, Max Weber의 empirische Rechtslehre와 theoretische Rechtslehre를 구별하는 立場이나 모두 단순한 理論的 法理論의 空虛함을 개탄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社會學, 經濟學, 史學, 教育學, 政治學등 法學의 周邊科學의 碩學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高見을 들어 法學研究의 폭을 넓히게 된 것은 매우 適切하고도 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모임에 우정 멀리서 오셔서 이 모임을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신 Harvard 대학의 Cohen 교수, 神戶大學의 河本教授를 비롯하여 主題 論文을 發表하시고 討論에 참가하기 위하여 모여 주신 參席者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또 遠路에 이곳까지 오셔서 祝辭를 하여 주신 韓總長께 또한 感謝의 말씀을 드리니다. 이 모임이 끝내 큰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始終 진지한 討論이 있으시기를 期待 하던서 이 세미나에 物心兩面으로 後援해 주신 I.L.C.當局 특히 이 세미나의 實現을 盡力 하여 주신 Metzger氏와 Beckman氏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1974年 4月 13日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 鄭 熙 喆